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15766(본소), 2020나15773(반소) 판결

[물품대금 · 계약금액반환 청구]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15766(본소), 2020나15773(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10236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최지혜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2.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률상 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김용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상섭

변론 종결2022. 1. 27.

판결 선고2022. 5. 12.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102369(본소), 2017가합107128(반소)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2,691,923,510원 및 그중 2,498,963,861원에 대하여는 2016. 11. 19.부터 2020. 11. 12.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92,959,649원에 대하여는 2016. 11. 19.부터 2022. 5.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645,015,378원임을 확정한다.

다.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50%는 위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률상 관리인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5%는 위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295,060,460원 및 그중 251,967,3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3,093,1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률상 관리인 C에게 26,7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1) 원고 A은 피고에게 5,625,153,663원 및 그중 3,240,563,062원에 대하여는 2016. 11.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2,384,590,601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2019. 5. 22. 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각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1) 은 2,177,631,305원임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의 항소취지

-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피고는 원고 A에게 295,060,460원 및 그중 251,967,3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3,093,1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위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1, 별지 2 부분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 4행 중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5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네 번째 행을 "2) 주식회사 B(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B'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제12면 제10행 중 각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조달사업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두 번째 표 아래 제5행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첫 번째 표 순번 3 중 "2013. 10. 20."을 "2014. 8. 2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2016. 11. 18. 원고 A에게, 제1 물품구매계약이 부당한 가격자료 제출로 인해 고가로 체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별지 3 환수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① 각 계약단가(같은 표 '단가'란 기재 각 금액)에 거래종결된 납품수량(같은 표 '종결수량'란 기재 각 수량)을 곱한 금액(같은 표 '종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② 피고 주장의 각 시중공급가격(같은 표 '거래단가(피고 주장)'란 기재 각 금액)에 위 거래종결된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같은 표 '적용금액(피고 산출)'란 기재 각 금액) 사이의 차액(같은 표 '환수금액(피고산출)'란

기재 각 금액]을 모두 합한 3,492,530,402원을 환수한다는 통보(이하 '제1 환수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3. 원고 A에게, 제2 물품구매계약이 고가구매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별지 4 환수내역표 기재와 같이 ① 각 계약단가에 거래종결된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같은 표 '종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② 피고 주장의 각 적정단가[같은 표 '변경(감액)단가'란 기재 각 금액]에 거래종결된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같은 표 '환수근거 단가 적용'란 기재 각 금액] 사이의 차액(같은 표 '환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모두 합한 2,384,590,601원을 환수한다는 통보(이하 '제2 환수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피고는 2016. 8. 4. 원고 B에게, 제3, 4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가 시장단가보다 고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8항 및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라, (1) 별지 5 환수내역표 기재와 같이 ① 각 계약단가(같은 표 '계약단가'란 기재 각 금액)에 납품수량(같은 표 '수량'란 기재 각 수량)을 곱한 금액과 ② 피고 주장의 각 시중공급가격(같은 표 '거래단가'란 기재 각 금액)에 위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같은 표 '적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차액(같은 표 '환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모두 합한 560,804,590원, (2) 별지 6 환수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계약단가(같은 표 '계약단가'란 기재 각 금액)와 피고 주장의 각 시장단가(같은 표 '민수거래가격'란 기재 각 금액)의 차액에 납품수량(같은 표 '수량'란 기재 각 수량)을 곱한 금액(같은 표 '환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모두 합한 1,244,708,432원을 각 환수한다는 통보(이하 '제3 환수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0행 중 "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 구 조달사업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4행 중 "조달사업법"을 "구 조달사업법"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본소 청구원인 및 반소에 대한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납품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물품대금 중 일부를 유보한 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소로써 위 유보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및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반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 원고들이 제1, 3 물품구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가격자료와 별개로 직접 가격조사를 하여 각 계약단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과 피고가 위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를 결정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원고들은 제2, 4 물품구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조, 변조되었거나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거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의 환수금액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체결되었을 적정한 계약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각 환수금액 산정시 적용한 각 시장단가가 위와 같은 적정한 계약단가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와 원고들이 시중에 판매한 제품은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민간업체와의 거래에 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거래에는 추가 설계비 등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원고 A이 AP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등과 거래한 단가나 원고 B가 유한회사 AX, AY 등과 거래한 단가가 정당한 계약단가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1)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원인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제1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자료를 제출할 당시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로부터 고가 구매 금액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현장조사 및 재단법인 AO에 의뢰하여 실시한 '원가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제2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가 시중거래가격보다 고가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원고로부터 고가 구매 금액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다. 우수제품에 관한 계약단가 결정에서는 '원가계산가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위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기초자료가 사실과 상이하기 때문에 위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계약단가가 고가로 판명된 것이다. 위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손해에 대한 입증이 불필요하다.

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에게, ① 제1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한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른 환수금 3,240,563,062원(= 환수 대상금액 3,492,530,402원 - 대금지급 유보금 251,967,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제2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한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금 2,384,590,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에 대한 반소 청구원인 가) 원고 B는 피고에게 제3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자료를 제출할 당시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로부터 고가 구매 금액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확인 결과 제4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가 시중거래가격보다 고가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원고로부터 고가 구매 금액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에게, ① 제3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한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제4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한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환수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2020. 1. 20.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면 합계 2,177,631,305원(= ① 환수금 1,778,792,022원(= 환수 대상금액 1,805,513,022원 - 대금지급 유보금 26,721,000원) +

2016. 8. 5.(제3 환수통보일 다음 날)부터 2019. 11. 12.(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9,130,575원2) + 2019. 11. 13.부터 2020. 1. 2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9,708,708원3)]이다.

3.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환수금 청구 부분

1)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환수금 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요건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가로 구매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계약상대자에게 진실한 가격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고가로 결정된 결과 국가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위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환수금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참조).

피고는 위 환수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환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위 원고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라는 점, ② 그와 같은 허위의 가격자료 제출로 인하여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금액을 높게 책정하였다는 점, ③ 그로 인하여 피고가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핀다.

2) 원고 A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8 내지 10,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이 피고 산하 조달청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위 원고가 AP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등에 공급한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기재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거래명세표, 수량 및 단가를 공란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허위의 가격자료 제출로 인하여 피고가 고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조달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고 A이 제출한 허위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다수공급자계약의 토목용 보강재 단가를 결정하면서 위 원고가 실제로 시중에 공급한 단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오를 일으켜 위 원고의 시중공급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단가로 고가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자로 하여금 제3조 제9호의 가격자료[가격자료 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2개월간의 거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3조 제1항). 계약담당과장은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데,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15조 제1, 2항).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적격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협상기준가격의 결정 및 계약단가의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산하 조달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고 A이 제출한 가격자료(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제1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처리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위 원고가 실제 거래단가보다 상당히 부풀린 허위 가격자료가 아닌 진실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제1 물품구매계약은 위 진실한 가격자료에 기초하여 각 계약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체결되었을 것이다.

다) 원고 A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가격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단가를 정하게 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게 되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협상기준가격의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다. 또한 제1 물품구매계약 체결 당시 위 원고가 제출한 가격자료에 관하여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제1 물품구매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격조사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더욱이 제1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즈음하여 원고 A 외에도 다수의 토목용 보강재 판매업체들이 수년간 원고 A와 비슷한 방법으로 단가를 부풀린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중 공급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제1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는 조달공무원으로서 원고 A이 제출한 가격자료상의 단가가 실제 공급단가보다 부풀려진 것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A은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자료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각 기재하고 날인하였는데, 이는 위 원고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단가가 결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마)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신뢰하고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게 되고, 다만 가격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 거래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사후적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조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상 물품의 가격이나 거래 실정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점, 계약담당공무원이 수많은 조달계약 건에 대하여 일일이 실제 조사를 거쳐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데다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점,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현실을 도외시한 부적절하거나 자의적인 결정을 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진실함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환수금 청구 등 사후 규제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처리방법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의 손해 발생 여부 및 '고가로 계약된 금액'의 산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만약 허위의 가격자료가 아닌 실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피고는 그 실제 가격자료에 기초하여 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토대로 제1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위 원고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로 인하여 피고는 제1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와 실제 가격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계약단가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 A이 제1 물품구매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제출한 가격자료 중 일부(을 제10호증)에서 확인되는 단가 중 최저가와 계약단가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P-GRID 6T/3T	7,260/6,250	7,370/6,250		7,260/5,700
P-GRID 8T/3T	8,470/7,550	8,800/7,550		9,680/7,000
P-GRID 10T/3T	12,100/10,500	12,760/10,500		12,760/9,800
P-GRID 15T/3T	16,500/11,500	15,400/11,500		15,180/10,800
P-GRID 6T/6T	9,900/7,200	8,800/7,200		8,800/7,200
P-GRID 10T/10T	13,750/11,250	14,850/11,250		14,850/11,250
P-GRID 15T/15T	18,150/13,700	18,150/13,700		18,480/13,700
P-GRID 4T/3T	6,600/5,200	6,270/5,200		6,050/4,700
P-GRID 20T/3T	18,700/14,500	-	16,500/14,500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1 물품구매계약 체결 당시 위 원고가 제출한 가격자료에 기재된 단가에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위 가격자료 기재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각 계약단가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의 가중평균가격 또는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협상기준가격이 결정되므로, 만약 위 원고가 실제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실제 가격자료의 가중평균가격 또는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협상기준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이고, 위에서 본 각 계약단가 결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원고의 실제 시장공급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단가가 정해지지 않는 것일 것이다.

다) 원고 A의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실제 시장공급단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을 제11호증의 2), 조달청의 특정감사결과 보고서(을 제12호증), 원고 A의 대표이사 AG에 대한 문답서(을 제13호증의 2), 피의자진술조서(을 제23호증의 17, 24), 주식회사 AR의 대표이사 AS에 대한 진술조서(을 제23호증의 21), 주식회사 AT의 직원 AU에 대한 진술조서(을 제23호증의 22)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1 물품구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목용 보강재를 민간 업체들에게 아래 표 기재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2. 2. 14.	(주)BC	1,980	2,420	2,750	-	을13-2(제9면)
2012. 9. 30.	BD(주)	1,760	2,090	2,420	2,860	을13-2(제6면)
2013. 11. 26.	(주)AT	1,980	-	-	-	을23-22(제7, 19면)
2013. 5. 21. ~2014. 8. 28.	AP(주)	1,980	2,420	2,750	3,410	을11-2(제10면), 을13-2(제9면)
2014. 8. 31.	(주)BE	2,035	2,310	2,750	3,410	을12(제8면), 을23-12(제4면)
2014. 12. 10.	(주)AT	1,870	2,200	-	-	을23-22(제3~4, 15~17면)
2015. 3. 17.	(주)BF	1,980	-	-	-	을23-17(제6면)
2015. 3. 23. ~2015. 7. 15.	AQ(주)	-	2,970	3,300	3,850	을13-2(제9면)
2015. 5. 6.	(주)AT	1,650	1,980	2,310	-	을23-22(제3~4, 15~17면)
2012. 9. 30. ~2016. 8. 31.	(주)AR	3,850	4,400	4,950	5,500	을23-21 (제3~5면)

위 각 공급단가를 규격별·연도별로 분류하여 산술평균하면 아래 표의 '시중공급단가'란 기재 각 금액이 되는바, 이 각 금액을 원고 A의 실제 시장공급단가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위 표 기재 각 공급단가 중 AP 주식회사에 공급한 단가가 2013년 및 2014년의 시장공급단가이고 AQ 주식회사에 공급한 단가가 2015년의 시장공급단가임을 전제로 환수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표에서 본 가격자료들 중 AP 주식회사에 공급한 단가가 2013년과 2014년의 시장공급단가와 일치한다거나 AQ 주식회사에 공급한 단가가 2015년의 시장공급단가와 일치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PGRID10T/3T, 2x50m	2012	3,373	(주)BC	2012. 2. 14.	2,750
BD(주)	2012. 9. 30.	2,420			
2013	3,850	(주)AR	2012. 9. 30. ~2016. 8. 31.	4,950	
(주)AR	2012. 9. 30. ~2016. 8. 31.	4,950			
AP(주)	2013. 5. 21. ~2014. 8. 28.	2,750			
2014	3,483	AP(주)	2013. 5. 21. ~2014. 8. 28.	2,750	

PGRID10T/3T, 2x50m	2012	3,373	(주)BC	2012. 2. 14.	2,750
(주)AR	2012. 9. 30. ~2016. 8. 31.	4,950			
(주)BE	2014. 8. 31.	2,750			
2015	3,520	(주)AR	2012. 9. 30. ~2016. 8. 31.	4,950	
AQ(주)	2015. 3. 23. ~2015. 7. 15.	3,300			
P-GRID15T/3T, 2x50m	2012	4,180	BD(주)	2012. 9. 30.	2,860
(주)AR	2012. 9. 30. ~2016. 8. 31.	5,500			
2013	4,455	(주)AR	2012. 9. 30. ~2016. 8. 31.	5,500	
AP(주)	2013. 5. 21. ~2014. 8. 28.	3,410			
AP(주)	2013. 5. 21. ~2014. 8. 28.	3,410			
2014	3,410	AP(주)	2013. 5. 21. ~2014. 8. 28.	3,410	
(주)BE	2014. 8. 31.	3,410			
AQ(주)	2015. 3. 23. ~2015. 7. 15.	3,850			
2015	4,675	(주)AR	2012. 9. 30. ~2016. 8. 31.	5,500	
(주)AR	2012. 9. 30. ~2016. 8. 31.	5,500			
P-GRID6T/3T, 2x50m	2012	2,530	(주)BC	2012. 2. 14.	1,980
BD(주)	2012. 9. 30.	1,760			
2013	2,603	(주)AR	2012. 9. 30. ~2016. 8. 31.	3,850	
(주)AR	2012. 9. 30. ~2016. 8. 31.	3,850			
(주)AT	2013. 11. 26.	1,980			
2014	2,434	AP(주)	2013. 5. 21. ~2014. 8. 28.	1,980	
(주)AR	2012. 9. 30. ~2016. 8. 31.	3,850			
AP(주)	2013. 5. 21. ~2014. 8. 28.	1,980			
2015	2,493	(주)BE	2014. 8. 31.	2,035	

PGRID10T/3T, 2x50m	2012	3,373	(주)BC	2012. 2. 14.	2,750
(주)AT	2014. 12. 10.	1,870			
P-GRID8T/3T, 2x50m	2012	2,970	(주)AR	2012. 9. 30. ~2016. 8. 31.	3,850
(주)BF	2015. 3. 17.	1,980			
2013	3,410	(주)AT	2015. 5. 6.	1,650	
(주)AR	2012. 9. 30. ~2016. 8. 31.	3,850			
(주)AR	2012. 9. 30. ~2016. 8. 31.	4,400			
2014	2,833	(주)BC	2012. 2. 14.	2,420	
BD(주)	2012. 9. 30.	2,090			
(주)AR	2012. 9. 30. ~2016. 8. 31.	4,400			
2015	3,117	AP(주)	2013. 5. 21. ~2014. 8. 28.	2,420	
AP(주)	2013. 5. 21. ~2014. 8. 28.	2,420			
2016	4,400	(주)BE	2014. 8. 31.	2,310	
(주)AT	2014. 12. 10.	2,200			
			(주)AR	2012. 9. 30. ~2016. 8. 31.	4,400
AQ(주)	2015. 3. 23. ~2015. 7. 15.	2,970			
			(주)AT	2015. 5. 6.	1,980
(주)AR	2012. 9. 30. ~2016. 8. 31.	4,400			
			(주)AR	2012. 9. 30. ~2016. 8. 31.	4,400

라) 만일 위 다)항에서 본 실제 가격자료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면, 피고는 적어도 위 다)항에서 산정한 시중공급단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는 계약단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원고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의 손해는 제1 물품구매계약의 각 계약단가와 위 다)항에서 산정한 시중공급단가 사이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제1 물품구매계약 대상 물품의 시장공급단가는 당해 업계 전반에서 그 계약 당시 통용되는 단가를 의미하므로, 각 연도별로 원고 A이 1~2개 회사에 판매한 제품 단가를 시장공급단가로 보아 '고가로 계약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시중공급단가와 계약단가 사이의 차액을 토대로 '고가로 계약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다수공급자계약인 제1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는 위 원고의 시장공급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협상기준가격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의 시장공급가격이 아닌 토목용 보강재 판매업자들 전체의 시장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2) 원고 A의 시장공급가격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대표이사나 거래처의 직원 등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원고의 민간업체에 대한 실제 공급단가에 관하여 위 원고 대표이사 AG이 감사원의 감사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주식회사 AR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AT의 직원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원고 A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위 다)항에서 본 업체 외의 다른 민간업체에 공급한 토목용 보강재의 가격도 위 다)항에서 산정한 시중공급단가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 가격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 A을 비롯하여 다수의 토목용 보강재 납품업체들이 피고에게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위 각 형사판결문에서 인정된 토목용 보강재의 규격별 공급가격이나 위 각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 업체들이 민간에 판매한 토목용 보강재의 규격별·연도별 시장단가를 산술평균한 값5)도 위 다)항에서 산정한 시중공급단가와 큰 차이가 없다.

바) 원고 A은, 제1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와 위 다)항에서 본 실제

가격자료상의 토목용 보강재는 유통구조, 추가 설계비 등 거래비용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이 민간에 공급한 시장단가를 제1 물품구매계약에서 책정되었어야 할 정당한 계약단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은 제1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위 원고가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관급자재)와 일반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공급한 토목용 보강재(사급자재)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와 위 다)항에서 본 실제 가격자료상의 토목용 보강재는 동일한 제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A이 제1 물품구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반 민간업체에 공급한 단가보다 수 배가량 높은 단가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조달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가 일반 민간업체에 공급한 단가보다 약 3~4배 정도 높게 결정되었는데, 원고 A이 제1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관급자재)의 품질과 시중에 판매한 토목용 보강재(사급자재)의 품질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다수공급자계약은 ①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②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③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 물품구매계약은 원고 A으로부터 규격화된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원고 A에 어떠한 추가적인 용역 업무를 부과하거나 인증을 받을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원고 A이 계약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은 차치하더라도, 그와 같은 비용이 다수공급자계약인 제1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금액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

(3) 원고 A 입장에서는 토목용 보강재를 시중에 공급하든 수요기관에 납품하든 토목용 보강재를 판매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한데, 시중 판매단가와 달리 유독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계약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단가를 정한다는 것은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사전에 피고에게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수용되기 어렵다.

(4) 나라장터에 물품이 등록된 후에야 각 수요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하고 납품을 받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구조 및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 대신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을 수요기관'이 특정될 수 없고, 그 결과 필요한 용역 내지 인증의 내용 역시 특정될 수 없다. 원고 A이 설계용역을 수행하거나 인증 등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 제반비용을 임의로 미리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수공급자계약이 이러한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반비용까지 포함한 단가로 체결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원고 A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환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 A이 수요기관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때(납품종료일)로부터 진행되며, 위 환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피고가 원고 A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7. 11. 9.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채권, 즉 납품종결일이 2012. 11. 9. 이전인 납품건에 관한 피고의 환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 환수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품종결일이 2012. 11. 9. 이전인 납품건에 관한 피고의 환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그러나 을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 위 환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인 2016. 12. 8.부터 2017. 1. 24.까지 국고금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참조). 원고 A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환수금 지급의무의 범위 피고는 제1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와 앞서 본 시중공급단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구체적인 손해액은 원고 A이 납품한 품목별 계약단가와 시중공급단가의 차액에 위 원고가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물량(별지 3 환수금 산정표의 '종결수량'란 기재 각 수량)을 곱한 금액이고, 그 합계액은 별지 3 환수금 산정표의 '환수금액(법원산정)'란 기재와 같이 합계 2,986,983,970원이 된다.

나. 제2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환수금 청구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3행부터 제27면 밑에서 세 번째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이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손해에 대한 입증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하나, 설령 위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이 민법 제398조가 말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중간결론

제1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수금은 2,986,983,970원이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2,691,923,510원(= 환수금 2,986,983,970원 - 대금지급 유보금 295,060,460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2,498,963,861원에 대하여는 제1 환수통보일 다음 날인 2016. 11. 19.부터 원고 A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92,959,649원에 대하여는 위 2016. 11. 19.부터 원고 A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B에 대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3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환수금 청구 부분

1) 원고 B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가 피고 산하 조달청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위 원고가 유한회사 AX, AY 등에 공급한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기재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거래명세표, 수량 및 단가를 공란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허위의 가격자료 제출로 인하여 피고가 고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조달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고 B가 제출한 허위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다수공급자계약의 토목용 보강재 단가를 결정하면서 위 원고가 실제로 시중에 공급한 단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오를 일으켜 위 원고의 시중공급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단가로 고가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살펴 본 업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격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협상기준가격의 결정 및 계약단가의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산하 조달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고 B가 제출한 가격자료(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제3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처리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위 원고가 실제 거래단가보다 상당히 부풀린 허위 가격자료가 아닌 진실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제3 물품구매계약은 위 진실한 가격자료에 기초하여 각 계약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체결되었을 것이다.

다) 원고 B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가격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단가를 정하게 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게 되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협상기준가격의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다. 또한 제3 물품구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B가 제출한 가격자료에 관하여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제3 물품구매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격조사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더욱이 제3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즈음하여 원고 B 외에도 다수의 토목용 보강재 판매업체들이 수년간 위 원고와 비슷한 방법으로 단가를 부풀린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중 공급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제3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는 조달공무원으로서 원고 B가 제출한 가격자료상의 단가가 실제 공급단가보다 부풀려진 것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B는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자료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각 기재하고 날인하였는데, 이는 위 원고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단가가 결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마) 위 3.의 가.3)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일단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진실함을 전제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환수금 청구 등 사후 규제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처리방법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의 손해 발생 여부 및 '고가로 계약된 금액'의 산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가 만약 허위의 가격자료가 아닌 실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피고는 그 실제 가격자료에 기초하여 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토대로 제3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위 원고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로 인하여 피고는 제3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와 실제 가격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계약단가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 B가 제3 물품구매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제출한 가격자료(을 제24호증의 16, 18)에서 확인되는 단가 중 최저가와 계약단가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WD 6T	8,580	8,580	5,800
WD 8T	10,780	10,780	7,300
WD 10T	14,300	14,300	9,600
WD 15T	15,730	15,620	10,600
CH 6T	12,100	12,100	8,200
CH 8T	14,630	14,630	9,900
WD 4T	6,490	6,380	4,400
WD 20T	17,930	17,820	12,100
CH 4T	9,240	9,130	6,200
CH 10T	18,810	18,810	12,700
CH 15T	21,340	21,340	14,400
CH 20T	23,540	23,430	15,900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3 물품구매계약 체결 당시 위 원고가 제출한 가격자료에 기재된 단가에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위 가격자료 기재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각 계약단가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의 가중평균가격 또는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협상기준가격이 결정되므로, 만약 위 원고가 실제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실제 가격자료의 가중평균가격 또는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협상기준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이고, 위에서 본 각 계약단가 결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원고의 실제 시장공급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단가가 정해지지 않는 것일 것이다.

다) 원고 B의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실제 시장공급단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조달청에서 실시한 특정감사결과 보고서(을 제12호증), 원고 B의 대표이사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을 제24호증의 9), 각 전자세금계산서(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3 물품구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목용 보강재를 민간 업체들에게 아래 표 기재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 공급단가를 규격별·연도별로 분류하여 산술평균할 경우 피고가 환수금액 산정시 적용한 시중공급단가와 같거나 더 낮은 점, ② 원고 B가 2014년에 아래 표에 기재된 업체 외의 다른 민간업체에 공급한 토목용 보강재의 가격도 피고가 적용한 시중공급단가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 가격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토목용 보강재 납품업체들에 관한 형사판결문에서 인정된 규격별 공급가격이나 위 각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 업체들이 민간에 판매한 토목용 보강재의 규격별·연도별 시장단가를 산술평균한 값도 피고가 적용한 시중공급단가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용한 시중공급단가가 원고 B의 실제 시장공급단가와 일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4. 3. 17.~ 2015. 12. 9.	(유)AX	-	-	-	-	2,530	2,970
2014. 3. 17.~ 2015. 12. 9.	AY(주)	1,980	2,420	2,640	3,410	-	-
2014. 7.	(주)BG	1,540	-	-	-	-	-
2014. 7.	BH	-	2,090	-	-	-	-
2014. 8.	BI(주)	-	-	2,640	-	-	-

라) 만일 위 표에서 본 실제 가격자료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면, 피고가 적용한 시중공급단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는 계약단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원고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의 손해는 제3 물품구매계약의 각 계약단가와 피고가 적용한 시중공급단가 사이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원고 B는, 제3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와 위 다)항에서 본 실제 가격자료상의 토목용 보강재는 유통구조, 추가 설계비 등 거래비용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가 민간에 공급한 시장단가를 제3 물품구매계약에서 책정되었어야 할 정당한 계약단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3.의 가.4)바)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 B가 수요기관에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와 위 다)항에서 본 실제 가격자료상의 토목용 보강재는 동일한 제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4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환수금 청구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8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6면 제10행부터 제38면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이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손해에 대한 입증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하나, 설령 위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이 민법 제398조가 말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중간결론

제3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B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수금은 합계 645,015,378원[= 원금 534,083,590원(= 환수금 560,804,590원 - 대금지급 유보금 26,721,000원) + 위 원금에 대하여 제3 환수통보일 다음 날인 2016. 8. 5.부터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0,931,788원7)]이다.

피고는 2019. 11. 1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3.항 및 4.항에서 인정한 각 환수금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을 유보한 각 물품대금채무는 위 각 환수금의 산정 과정에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 A의 본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한소영

판사박진환

판사김병식

별지

1)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2항 중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법률상관리인 C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의 오기로 보인다.

2) = $(1,778,792,022\text{원} \times 0.06 \times 3\text{년}) + (1,778,792,022\text{원} \times 0.06 \times 99\text{일} \div 365\text{일})$

3) = $(1,778,792,022\text{원} \times 0.15 \times 68\text{일} \div 365\text{일})$

4) 편의상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중 가장 낮은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5) 2021. 12. 15. 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6) 편의상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중 가장 낮은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7) = $534,083,590\text{원} \times 0.06 \times [3\text{년} + \{169\text{일} \div 366\text{일}(2020\text{년이 윤년임을 고려함})\}]$